

2023년 하반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

2023년 하반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7월 31일

전주시장

I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3. 8. ~ 용자 소진 시까지
- 용자규모 : 하반기 97.2억원
 - ※ 용자금액 소진 시까지 매월 접수하며 용자소진 시 접수 마감
- 지원내용 : 업체별 경영안정 운전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
- 지원대상 :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
 - 지식서비스산업업체 추가로 인한 지원대상 확대

※ 「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6조 용자대상업체

- ① 제조업체
- ② 시내버스 운송업체 또는 법인택시업체
- ③ 시 지정음식업체
- ④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체
- ⑤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과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
- ⑥ 벤처기업집적시설내 입주업체
- ⑦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입주업체
- ⑧ 소프트웨어진흥구역내 입주업체
- ⑨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- ⑩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「소득세법」 제168조 및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
- ⑪ 농업관련 제조업 및 수출업체
- ⑫ 중소수출업체
- ⑬ 바이전주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업체
- ⑭ 「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」에 의한 우수향토기업으로 선정된 업체
- ⑮ 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
- ⑯ 「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의한 사회적 기업
- ⑰ 지식서비스산업업체<신설 2023.07.25.>

II

세부지원내용

□ 업종별 세부 지원대상

지원업종	세부 지원 대상																				
제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품 매출액 실적이 있으며 공장등록을 한 기업 ○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소기업 중 제조업 ○ 「중소기업 창업지원법」에 따라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장설립 인·허가를 받은 기업 																				
지식서비스 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산업발전법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기본으로 하되,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으나 해당업종의 매출 실적이 있어야 함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해당업종</th> <th>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○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</td> <td>582</td> </tr> <tr> <td>○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</td> <td>5911</td> </tr> <tr> <td>○전기통신업</td> <td>612</td> </tr> <tr> <td>○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</td> <td>62</td> </tr> <tr> <td>○정보서비스업</td> <td>63</td> </tr> <tr> <td>○연구개발업</td> <td>70</td> </tr> <tr> <td>○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</td> <td>72</td> </tr> <tr> <td>○전문디자인업</td> <td>732</td> </tr> <tr> <td>○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</td> <td>73909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해당업종	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	○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582	○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	5911	○전기통신업	612	○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	62	○정보서비스업	63	○연구개발업	70	○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	72	○전문디자인업	732	○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73909
해당업종	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																				
○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582																				
○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	5911																				
○전기통신업	612																				
○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	62																				
○정보서비스업	63																				
○연구개발업	70																				
○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	72																				
○전문디자인업	732																				
○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73909																				

□ 지원내용

- 융자한도 : 업체당 3억원 이내(소상공인 2천만원 이내)
 - 융자한도액은 연간매출액의 1/2범위 이내로 지원하나, 5천만원 이하 신청업체는 신청금액의 전액지원
- 융자(이차보전)기간 : 2년(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)
- 대출취급은행 : 전주시 관내 소재하고 있는 금융기관(9개소)
 - 전북, KB국민, 신한, IBK기업, KEB하나, KDB산업, 우리, NH농협, 수협
- 이차보전을율 : 최대 3.5%
 - 일반기업 3.0%
 - 여성·장애인기업, 벤처·바이전주, 우수향토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3.5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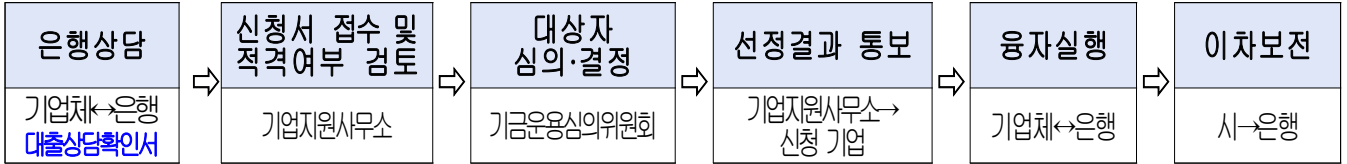
□ 지원제외

-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업종(별첨2)
- 전주시 지방세 체납업체
- 우리시에서 지원 받은 융자 만기일(조기 상환의 경우 융자금 상환일)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

III

추진절차 및 계획

□ 지원절차



□ 신청서 접수

○ 접수일정

월	접수기간	선정 통보	용자실행기간	비 고
8월	8. 2.(수) ~ 8. 11.(금)	8. 25. 한	8. 28. ~ 10. 28.	
9월	8. 28.(월) ~ 9. 8.(금)	9. 22. 한	9. 25. ~ 11. 25.	추석 명절 이전 선정
10월	10. 2.(월) ~ 10. 13.(금)	10. 27. 한	10. 30. ~ 12. 30.	
11월	11. 1.(수) ~ 11. 17.(금)	12. 1. 한	12. 1. ~ 2. 1.	

※ 선정 통보 및 실행기간 일정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, 용자소진 시 접수 마감

○ 접수방법 : 방문/우편/E-mail 접수

- 주 소 : 덕진구 팔과정로 164,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3층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

- 이메일 : CJFALS27@korea.kr ※ 신청 마지막날의 경우 18:00 이전까지 도착분에 한함

○ 신청서 : 전주시청 누리집(<https://www.jeonju.go.kr>) 고시/광고 다운

○ 문의 : 기업지원사무소(☎281-2068)

○ 제출서류 ※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업체 별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
구 분	구 비 서 류
공 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(붙임 1) 용자신청서 1부 ○(붙임 2) 대출상담확인서 1부 ○(붙임 4)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이행약약서 1부 ○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○최근 2년간 재무제표 각 1부 (소상공인 제외) ※ 회계사·세무사 직인 날인 필 ○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(소상공인 제외) ○(붙임1-1) 사업계획서 1부 ○(붙임 3)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해당업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(제조업체)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(사업장면적이 500㎡미만인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근생·제조시설) ○(소상공인)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1부 ○이차보전을 증빙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벤처기업확인서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확인서 사본 1부 (중소벤처기업청, 기술보증기금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벤처캐피탈협회 확인) - 바이전주 우수상품 인증서 사본 1부 -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1부 - 우수향토기업 인증서 사본 1부 - 장애인기업 확인서 사본 1부 ○특허, 실용신안권, 디자인, 상표, 저작권 등록 사본(특허청) ○국내외 규격 인증(품질검증, 제품인증) 증빙 사본(GMP, HACCP, ISO, KS, CE 등) ○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, 도지사인증상품 확인서 사본 ○수출실적 확인증명(한국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발급) ○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 포상 증빙서류 ○시정참여(포상, 각종행사 참여 등) 증빙서류

□ 지원 대상 결정

- 용자평가표[별첨1]에 의거 총 100점 중, 40점 이상인 업체 지원
 - ※ 용자 제외업종, 지방세 체납업체, 용자상환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제외
- 접수 업체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평가표[별첨1]에 의거 업체별 점수에 따라 지원자금 범위에서 지원 한도금액 결정
-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청 금액 대비 지원 결정액이 조정될 수 있음

□ 용자 신청

- 용자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이내 거래 은행에서 정하는 소정의 절차(담보 또는 신용보증서)에 의하여 대출 신청
 - ☞ 2개월 이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, 1회에 한하여 대출기한 1개월 연장가능
 - ☞ 선정통보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 대출하지 못할 경우, 용자지원 결정 실효

□ 이행 및 유의사항

- 관외 전출, 휴·폐업 등 지원 중단 사유 발생 또는 업체 명칭·대표자·소재지 등 기업운영 변경사항 발생 시 자진하여 전주시 및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
- 여성·장애인기업, 벤처·바이전주 및 우수향토기업 등 3.5%의 이자보전을 받는 기업의 경우 해당 인증 만료에 맞춰 연장 완료 후 전주시 통보
 - ※ 연장 만료 시, 만료 기간 동안 3% 이자보전을 적용

□ 기타사항

-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와 전주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처리

- 붙임 1.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신청서 1부.
1-1. 사업계획서 1부.
2. 대출상담확인서 1부.
3.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.
4.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이행 협약서 1부.

[별첨 1]

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평가표

평가사항		내 용	배 점	특 점	비 고
기업건실도 (50)	연간 매출액 (10)	◦ 15억원 이상	10		재무제표
		◦ 10억원이상 ~ 15억원미만	8		
		◦ 5억원이상 ~ 10억원미만	6		
		◦ 5억원미만	4		
	자산규모 (10)	◦ 10억원미만	10		
		◦ 10억원이상 ~ 20억원미만	8		
		◦ 20억원이상	6		
	자기자본 비율 (10)	◦ 50% 이상	10		
		◦ 30% 이상 ~ 50% 미만	8		
		◦ 10% 이상 ~ 30% 미만	6		
		◦ 10% 미만	4		
	사업영위기간 (10)	◦ 10년 이상	10		사업등록증
		◦ 7년이상 ~ 10년 미만	8		
		◦ 5년이상 ~ 7년 미만	7		
		◦ 3년이상 ~ 5년 미만	6		
		◦ 3년 미만	5		
성장 가능성 (10)	◦ 신규 융자업체	10	전주시 확인		
	◦ 1회 이상 기용자체	7			
	◦ 2회 이상 기용자체	5			
	◦ 3회 이상 기용자체	3			
기업역량 (30)	매출액 증가율 (10)	◦ 20% 이상	10	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	
		◦ 10%이상 ~ 20%미만	8		
		◦ 0%이상 ~ 10%미만	6		
		◦ 0%미만	3		
	지식재산권 및 규격인증 (15)	◦ 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(의장)·상표, 저작권 등록 등 ◦ 국내인증(품질경영, 제품인증), 국외인증 (건당 3점)	15	인증서 사본 (특허청 등)	
수출기업 여부 (5)	◦ 수출액 1억원(100,000\$) 이상	5	수출실적확인증명서 (한국무역협회, 무역통계진흥원)		
	◦ 수출액 1억원(100,000\$) 미만	3			
	◦ 수출실적 없음	0			
지역경제기여도 (20)	고용인원 (15)	◦ 20인이상	15	4대보험 가입자명부 (대표제외)	
		◦ 10인이상 ~ 20인미만	12		
		◦ 5인이상 ~ 10인미만	9		
		◦ 5인미만	6		
	지역사회 공헌 (5)	◦ 3년간(2020-2022) 시책설명회·간담회,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 (각 1점)	5	증빙서류	
소 계	100				
가점사항 (15)	기업인증 (3)	◦ 벤처기업, 기술혁신·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녹색인증기업 ◦ 신기술(ET·NF)인증기업, 기업부설연구소,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	3	인증서 사본 (한국산업기술진흥회, 국가기술표준원)	
	기 타 (10)	◦ 우수향토기업, 바이전주우수업체	5		
		◦ 유망중소기업, 도지사인증상품기업	3		
		◦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사회적기업	2		
포상실적 (2)	◦ 기업운영 관련 정부·지자체 및 공공기관 포상(최근 3년)	2	포상확인 증빙서류		
감점사항 (-3)	융자포기 (-3)	◦ 전년도 선정기업 중 융자포기(대출 미실행)기업	-3	전주시 확인	
총 계					

[별첨 2]

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

○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(중소벤처기업부 제2023-377호)

업종 분류	산업분류코드(KSIC)	융자제외 업종
제조업	33402 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건설업	41 ~ 42	건설업(단,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(41225), 환경설비 건설업(41224), 조경 건설업(41226), 배관 및 냉·난방 공사업(42201), 건물용 기계·장비 설치 공사업(42202), 방음, 방진 및 내화 공사업(42203), 소방시설 공사업(42204), 전기 및 통신공사업(423)은 지원가능 업종)
도매 및 소매업	46102 中	담배 중개업
	46~47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
	46331, 3	사행성,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, 주류, 담배 소매업
	47859 中	주류, 담배 도매업(단,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)
	47993 中	성인용품 판매점
숙박 및 음식점업	5621	다단계 방문판매
정보통신업	58 中	주점업
	59142	경마, 경륜,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,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정보서비스업	63999 中	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
금융 및 보험업	64 ~ 66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,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(63999-1)
부동산업	68	금융 및 보험업(단,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(66199)은 지원 가능)
전문서비스업	711~2	부동산업
	7151	법무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
수익업	731	회사본부
사업 지원 서비스업	75330	수익업
	75999 中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
임대업	76390 中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
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	84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교육서비스업	851~854	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
	855~856 中	초·중·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
보건업	86	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91113	보건업 (단,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)
	9124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	91291	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협회 및 단체	94	무도장 운영업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992	협회 및 단체 (단, 「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」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)
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	97 ~ 98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
국제 및 외국기관	99	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
		국제 및 외국기관

[붙임 1]

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신청서

1. 업 체 명			사업자등록번호	
			법인등록번호	
2. 소 재 지			전화번호	
			팩스 또는 이메일	
3. 대 표 자			생년월일	
			H·P	
4. 용자신청액	금 원 (₩)			
5. 자금용도	원료구입, 기계보수, 임금지급, 기타()			
6. 업 체 현 황				
○ 업 종		주생산품		
○ 공장 규모	대 지 :	m ²	건 물	동 m ²
○ 연간 생산	생산량 :		매출액 (수출포함)	백만원
○ 종 업 원	총	명(대표제외)	(생산직: 명, 사무직: 명)	
○ 자 산	총액	백만원	(자본: 백만원, 부채: 백만원)	
○ 대출희망은행	은행		지점	
○ 특기 사항				

위와 같이 「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를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자 기 업 체 명 :

대표자 성명 :

(인)

전 주 시 장 귀하

[붙임 1-1]

사 업 계 획 서

구 분	내 용
1. 사 업 기 간	<input type="radio"/> 2023. . . ~ 202 . . . (년간) ※ 사업기간 2년
2. 사 업 개 요	<input type="radio"/>
3. 세부사업별 소요 자금 (산출 근거)	<input type="radio"/>
4. 소 요 자 금 조 달 방 법 (자기자본,융자,기타)	<input type="radio"/> 자기자본 : 백만원 <input type="radio"/> 융 자() : 백만원 <input type="radio"/> 기 타() : 백만원 <input type="radio"/> 합 계 : 백만원
5. 생산효과 및 수 익 성	<input type="radio"/>
6. 융자금 상환 계 획	<input type="radio"/> 만기 시 일시상환 () <input type="radio"/> 기간 내 분할상환 ()
7. 기 타	<input type="radio"/>

[붙임 4]

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이행 약속서

업 체 명

대 표 자

소 재 지

용자신청금액

「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」 제8조(용자 신청), 제13조(용자금의 상환), 제20조(변경사항통보), 제21조(사후관리)의 규정에 의거 다음 의무사항을 인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, 불이행시 전주시 관련 규정에 따른 용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.

1. 용자지원일부터 용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다음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관련 자료를 시 기업지원과와 대출은행에 즉시 통보합니다.
 - 상호, 대표자, 소재지, 법인전환,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 등
2. 전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·휴업, 기업운영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용자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, 사유 발생 후 지원받은 이차보전금은 반납하여야 합니다.
3. 시에서 자금의 사용용도 및 변경사항 등을 실태조사하거나 자료(재무제표 등)를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합니다.

※ 용자 불가사항 : 대출자금 대환용, 은행 재테크, 투기목적의 부동산 매입용, 기타 기업운영 목적 외 사용 등

20 년 월 일

신청인(대표) :

(인)